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6.9.22.(목)	담당부서	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
담당과장	오유천과장(043-870-5430)	담 당 자	남택주 연구관(043-870-5432)

국표원, 갤럭시 노트7 자발적 리콜 공식 승인

– 배터리 안전성 확인 강화,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일부 보완 –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**은 9.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, 삼성전자가 제출(9.8.)한 갤럭시 노트7의 **'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**(이하 자발적 리콜 계획서)'를 **일부 보완하여 공식 승인**했다..

○ 당초 자발적 리콜 계획은 9.2일부터 **판매를 중지**하고, 9.19일까지 **환불** 또는 9.19일부터 내년 3.31.까지 양품배터리를 장착한 **개선 제품으로 교환**한다는 계획이었으며, 아래 사항을 삼성측과 협의해 **추가적으로 조치**하기로 했다.

○ 첫째, 사고의 원인이었던 **배터리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**하기 위해, 배터리 제조사의 **출하전에 엑스레이(X-Ray) 전수 검사**, 삼성전자의 **배터리 입고 검사시 핵심 품질인자 전수 검사 등**을 실시하기로 했다.

○ 둘째,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9.19.까지이던 **환불 기한을** 개통취소 후 동일 이통사 내 기기변경 조건에 한해 **9월말까지 추가 연장**하기로 했다.

○ 셋째,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**신속히 제품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고객 대상 개별 문자 발송, 충전시 교환을 권유하는 알림창 노출** 등의 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.

○ 자발적 결함 보상(리콜) 세부 내용은 **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**(http://www.safetykorea.kr) 및 **삼성전자**(http://www.samsung.com) **누리집**에서 확인 가능하다.

□ 이에 앞서 국표원은 지난 20일에도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열고 **갤럭시 노트7의 결함 원인**과 **자발적 리콜 계획이 위해를 제거하는데 충분한지를 검토**했다.

○ 제품안전자문위원회는 사고 원인이 **특정 배터리 제조사의 셀 제조 공정 문제**로 극판 눌림 등이 발생하여 음극과 양극이 접촉하는 **배터리 결함**에 있고, **다른 배터리 제조사의 양품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은 안전**하다는 **삼성의 분석에 문제가 없다**고 판단하고,

○ 다만 삼성전자에 **배터리 안전성 확인 강화, 소비자 선택권 확대, 신속한 제품 회수 조치 등의 보완을 요청**했다.

□ 국표원 관계자는 “사용자들에게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실시한 배터리 점검이 제품 안전을 100% 담보할 수 없는 만큼 **최대한 신속하게 삼성전자 제품 회수 프로그램에 참여**할 것을 당부하고,

○ 삼성전자에게는 앞으로 리콜 이행도 성실히 실시하여 **모범적인 자발적 리콜 사례**가 되기를 기대한다.“고 말했다.

□ 앞으로 국표원은 삼성전자의 **자발적 리콜 이행을 면밀히 점검**하기 위해 **진척상황 보고서**(계획서 제출 후 1개월)와 **결과 보고서**(계획서 제출 후 2개월)외에도 **매주 이행 상황을 점검**하기로 했다.

○ 또한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판매를 재개하는 갤럭시 노트7의 안전성을 **지속적으로 점검**할 예정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오유천 과장(☎ 043-870-5430) 또는 남택주 연구관(☎ 043-870-543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| 자발적 리콜 계획서 주요내용

□ 당초 계획서 주요 내용

○ **대상** : 갤럭시 노트7 45.6만대(7.30.~9.2. 제조)

○ **조치방법 및 기간**

① **판매중지**(9.2.)

* 양품 배터리를 장착한 개선제품을 판매 재개(9.28.)

② **환불**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(~9.19.)

③ 개선제품 **교환**('16.9.19.~'17.3.31.)

□ 보완 계획서의 주요 보완 내용

① **배터리 안전성 확인 조치**

- 배터리 제조사는 출하前 X-Ray 전수 검사
- 삼성전자는 공정내 배터리 검사시 배터리 핵심 품질인자 전수 검사 등

② **환불 : 약정폰에 대한 환급기간 연장**(~'16.9.30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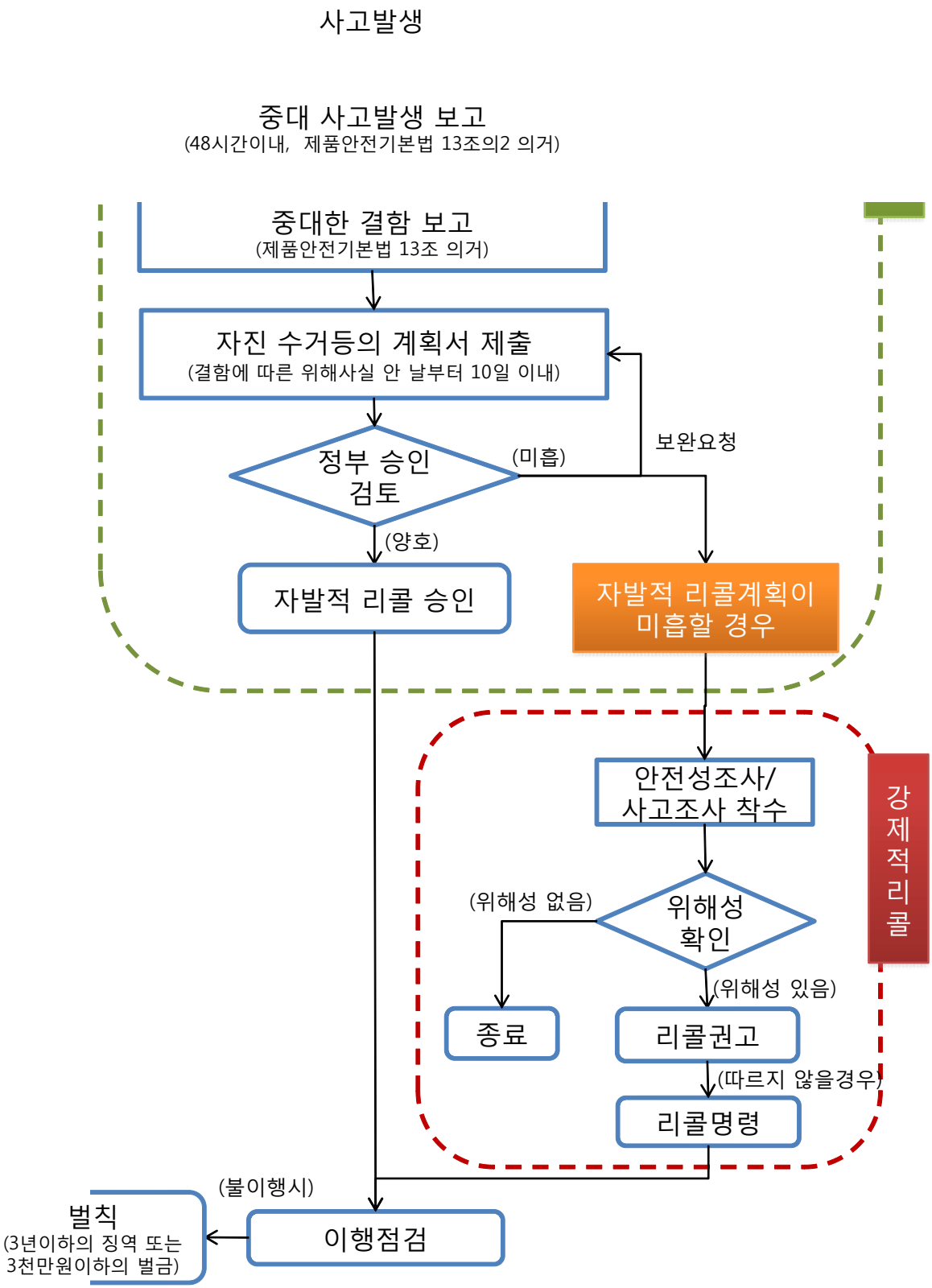
- 동일 이통사內에서 개통취소 후 소비자 요구모델로 기기변경

③ **신속히 제품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**

- 全고객 대상 개별 문자 발송(9/5~)
- 충전시 교환을 권유하는 팝업 노출(9/20~) 등

※ 갤럭시 노트7의 자발적 리콜 세부 내용은
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(http://www.safetykorea.kr) 및
삼성전자(http://www.samsung.com)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

참고 2 국내 리콜 절차도 (제품안전기본법)



참고 3 | 그간의 주요 경과

○ 9.1. 국표원, 갤럭시 노트7 관련 **제품사고 발생 보고 요청**

*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의2(사업자의 보고 의무) 제1항

> **제13조의2(사업자의 보고의무)** ① 사업자는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의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(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는 제외한다)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의 명칭·사고내용 및 판매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> 1. 사망 사고
> 2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
> 3. 화재 또는 폭발 사고
> 4. 동일한 제품이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

○ 9.2. 국표원에 갤럭시 노트7 관련 **'제품사고 발생 보고서'** 제출(삼성)

○ 9.2. 국표원에 갤럭시 노트7 **'제품 결함 보고'** 제출(삼성)

*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(사업자의 제품 수거 등의 의무 등) 제1항

> **제13조(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)** ①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한다.

○ 9.2. 삼성이 갤럭시 노트7 사고와 관련 전량 동일 제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, 환불 등의 계획 발표

○ 9.8. 국표원에 갤럭시 노트7 **'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'** 제출(삼성)

*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(사업자의 제품 수거 등의 의무 등) 제1항

○ 9.8. 美 FAA, 기내에서 갤럭시 노트7 사용금지 권고

○ 9.9. 美 CPSC, 소비자에게 사용중지 권고

○ 9.15. 美 CPSC, 삼성과 협의 후 공식 자발적 리콜 발표

○ 9.20. **제품안전자문위원회**를 개최하여 삼성에서 제출한 **'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'를 검토**하여 **보완 요청**

○ 9.21. 국표원에 보완한 **'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'** 제출(삼성)

○ 9.22. **제품안전자문위원회** 검토를 통해 **'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' 최종 승인**